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09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 : 임이자 • 구자근 • 김예지

박대수 • 박덕흠 • 서일준

양금희 • 이종성 • 정희용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환경·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는「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며,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기상청은 지난 2005년 「기상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제공·공동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감시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고, 예측을 통해서는 시공간 적 정량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등을 정부부처,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그간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라.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관측의 품질관리,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1·3개월전망 및 기후전망)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시나리오의 인증 등 기후·기후변 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 지).
- 바.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

- 사·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 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 등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의 추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대응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을 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아.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 4. "기후변화 감시"란 지구대기감시 관측과 기후 관측(기후를 감시하기 위하여 장기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5. "기후변화 감시 관측"이란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 7. "지구대기감시 관측"이란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 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미리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백여 년까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를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10.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 11.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 (이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 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 2.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의 구축 · 운영
- 3.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 · 관리 · 공동활용
- 4.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 5.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 · 개발
- 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7.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 8. 기후 · 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 9. 그 밖에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 2.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의 구축 · 운영
 - 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
 -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5.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 항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
 - 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기후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 · 기후변화 감시

- 제6조(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기후변화 감시 관측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관측환경·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 2. 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기상관측망 중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으로서 기후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관측망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

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선박·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 관측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감시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감시 관측 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후변화 감시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지구대기감시 관측망의 관측 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 장 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관측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

보를 수집 • 분석 • 생산하여야 한다.

- 1. 지구대기감시 물질
-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 요소와 기후시스템(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시스템 내 상호작용
- 3. 이상기후, 극한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 는 영향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분석·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후 · 기후변화 예측

- 제9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에 관한 예측 정보 (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전망 다음 계절과 연으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③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제

- 1항에 따라 생산할 수 있다.
- ④ 기후예측 정보 및 제3항에 따른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내용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1조에 따라 인증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 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 활용

- 제13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 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9조에 따른 기후 예측 정보 및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 보(이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 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제14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 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기상청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 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
 - 나.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
 - 다. 도시대기 특성 변화
 - 라. 인위적 환경 변화가 미기후(微氣候)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마. 기후변화가 강수 폭염 및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 바. 기후변화가 기후시스템과 기후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2.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전지구적 기원 추적 및 변화 추세
 - 3. 지구온난화를 특정 온도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 최대 한계로 허

용되는 인위적 배출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적 누적량

- 4.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사, 바람 등 기상자원 기반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관련 발전량 및 수요 예측·검증 등 지원에 필요한 기술
-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6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

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3.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 ②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상자원 기반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제18조(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제1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①

-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기후변화 분야의 비영리법인
- 7. 그 밖에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과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관련 국제기 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 3. 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정보 등의 공동활용
- 5. 인력교류
- 6. 공동조사·연구
- 7.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설립된 센터의 운영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위원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위원회의 위

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대응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 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 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3.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후 · 기후변화 인식확산

- 제24조(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 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원인·감시·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기후변화교육사의 양성) ① 기상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기후·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 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교육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27조(청문) 기상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2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임원·직원
 - 2.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직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기상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자문기구는 제5조에 따른 기후 변화감시예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 다.
- 제3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기상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 나리오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본다. 제4조(아태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

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태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본다.
- ①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 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를 "기상재해"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